

고 소 장

고소인

1. 박충열 2. 이민영 3. 우종원 4. 전원하 5. 김현권
6. 이병주 7. 여영학 8. 염종영 9. 김구현

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고소인

1. 이근안 2. 경무현 3. 황원복
4. 한중철, 윤기영, 이정환, 이길환, 라 송, 황인석, 강성문,
엄태진, 김해원, 박문규, 서성식, 양영주, 김봉철

각 주소불상. 1986년 10월부터 11월 경 사이에 고소인
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을 조사하며 고문으로-증거
를 날조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사법경찰관리들

5. 성명불상

1 내지 4 피고소인들의 증거날조행위를 교사, 방조하
거나 이에 공모, 가담한 수사 및 정보기관 공무원들

고소인들은 아래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12조 증거
날조죄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들은 1986년 10월말 경부터 11월 초순경 사이에 경기도
경 대공분실 소속 사법경찰관리로 근무하던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불법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拷問)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간첩, 지령수수 잠입탈출 등)를 저질렀다
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피해자이고, 피고소인들은 국
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또는 정보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
로서 고소인들을 고문하여 증거를 날조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
였거나 이에 가담하거나 혹은 지휘, 교사, 방조한 가해자들이다.

제5공화국 시절 "고문기술자"라는 이름으로 "국가테러"와 공포
의 상징이 되었던 피고소인 이근안은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으로서 고소인 박충열 등을 직접 고문한 것은 물론 다른 피고소
인들이 고소인들에게 가한 증거날조의 전과정을 지휘하고 통솔하
였다.

피고소인 경무현, 황원복은 남북어부 김성학씨를 고문하여 간

첩협의를 증거를 날조하여, 그 고문범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
은 자들로서 이근안과 함께 제5공화국의 여러 시국공안사건에서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한 자들이다.

피고소인 한중철은 당시 경장으로, 피고소인 이근안의 하수
인으로서 이근안과 함께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는 주로 고소인 박충열을 고문하였으며 키가 약180cm로 손이 크
고 볼이 늘어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피고소인 윤기영은 이 사건 당시 순경으로 고소인 이민영을 주
로 고문하였다. 키는 약 173cm 정도이며 얼굴은 약간 가름하고
안경을 썼고 서울 말씨를 쓰고 있었는데 당시 "윤차장"으로 불렸
으며 자신이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고소인 이정환, 이길환, 라 송, 황인석, 강성문, 엄태진, 김해
원, 박문규, 서성식, 양영주, 김봉철 등은 모두 당시 경기도경 대
공분실에서 작성된 고소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사법경찰
관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고소인들은 이들이 당
시 고소인들을 고문하여 증거를 날조하는 데 가담한 10여명의 경
찰관들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고소하는 것이다.

그밖에 성명불상자들은 당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으로서, 고소인들에 대한 이근안 등 피고소인들
의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행위에 공모, 가담, 교사, 방조한 자들
이다.

2. 14년이 지난 지금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1986년 10월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영장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인천에 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
간 고소인들은, 한 달이 넘도록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죽
음의 공포 속에서 짐승처럼 짓밟혔다. 밤낮 없이 끊이지 않던 비
명과 신음소리,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고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조
차 가지기 어려웠다. 그 무렵 흔히 일어나던 "의문사"의 대상이
되어 어딘가에 버려질지도, 어쩌면 "북한공산집단"의 "간첩"이
되어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고소인들을 짓누르고 있었
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당장 가해지는 고통
이었다. 통닭구이, 관절썩기, 물고문, 무차별 구타와 발길질, 몽둥
이질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피고소인들의 고문으로 고소인들의
온몸은 고춧가루물과 식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피멍이 들어,
실실했다 깨어나기를 거듭하였다. 육신은 갈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었고 화장실도 걸어서 갈 수 없었다. 의경들의 부축을 받아 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장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568-3439

전화 : 567-2316

팩스 :

록이며 복도를 오가던 고소인들은, 간혹 서로의 얼굴을 마주치고 서도 눈인사 한 번 건넬 수 없었다. 이근안이 주도한 그 인간도살의 현장에서 고소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나약한 육체에 가해지는 야만적인 고문의 고통을 이용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북한을 왕래하였으며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의 인간성을 철저히 유린한 다음 각본에 따라 사건을 조작하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고소인들은 살인적인 고문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면서 피고소인들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함정에 빠진 노리게감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소인들은 계속되는 고문의 후유증에 혹은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고문의 기억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고소인들은 비열한 고문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고소인들의 육체와 정신의 나약함을, 처참한 모멸감속에 기억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최근 이근안의 자수를 계기로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고소인들이 당한 고문의 진상이거나 있는 그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그 진상의 확인을 통하여 고문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근안이 “실무적으로” 주도한 군사정권의 고문체제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단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고문만을 인정하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근안 역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일부 사건에서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고문”사실을 털어놓았을 뿐,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며 참회의 모습을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고문에 의하여 낳지된 허위자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리고 고문범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수사와 재판제도를 개혁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소인들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이근안과 그의 일당을 국민앞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고소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아직도 고통속에서 곁에 질려 숨죽이고 사는 수많은 고문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고문의 실상을 공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데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수많은 고문기술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문을 자행하며 부추기고 또한 은폐해 온 경찰과 안기부(국가정보원), 검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제도를 개혁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국가보안법 제12조, 증거날조죄

가. 특별구성요건인 국가보안법 제12조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본래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코자 하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거나 또는 그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국가적 행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엄중히 다스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에 정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에도 처벌규정이 있지마는 본조(本條)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본조가 형법에 대한 특별관계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정경식, 이외수, 신국가보안법, 박영사 (1987), 289쪽).

나. 국가보안법 제12조와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에게 고문을 통해 강요한 허위자백은 주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의 수괴,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죄;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첩죄;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지령수수 잠입탈출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었는데, 이는 모두 그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피고소인들은 반란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공포정치를 유지하고 보상금과 승진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소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허위자백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고문을 가하였다.

피고소인들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었다. 피고소인들은 비록 수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가해서는 안되므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저지른 행위는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가진 직권을 남용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란 “범죄의 성부. 경중. 정상. 태양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인증(人證)이든 또는 물증(物證)이든 또는 서증(書證)이든 모두 포함되며, 그 증거가치의 여하도 불문한다.”(정경식, 이외수, 앞의 책, 297쪽)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제307조 내지 제318조의 2)을 거론할 것도 없이 자백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의 하나이며 결정적인 증거이다. 자백은 일단 사법경찰관이 작성하거나 그 면전에서 작성되는 형식의 자술서나 진술서 혹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그 다음 검사가 작성하거나 검사 앞에서 작성되는 형식의 자술서, 진술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백은 “서증”의 형식을 갖기도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이나 피고인 상호간의 진술 또는 증언이 되어 “인증”이 되기도 한다. 특히 특별한 물증이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자백은 가히 “증거의 왕”이라는, 중세 암흑시대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거나, 북한을 왕래하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아가 그것을 자백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자술서와 진술서 혹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을 교수대에 반쯤 달아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소인들이 순순히 자백을 하였으면 피고소인들이 것처럼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죄로 추정되고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한 인간을,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가해서는 안될 절대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절대적인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자백,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를 “조작해 내는 것”, 즉 증거의 “날조” 또는 그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검찰은 이근안을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정권에서 안기부, 경찰, 보안사, 검찰 등에서 저지른 고문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제4조의 2만을 적용하여 그 공소시효를 7년(치상의 경우) 또는 10년(치사의 경우)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저지르는 고문은 피의사실에 관한 자백을 억지로 받아내어 그를 형사처벌하려는 목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고문은 곧 허위자백의 조작, 즉 증거날조를 그 본질로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2조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를 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이며,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형법이나 특가법에 우선하여 국가보안법 제12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고소인들을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한 피고소인들은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정한 “증거날조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이 증거를 날조하여 고소인들로 하여금 받게 하려고 한 형사처분의 경우 그 법정형의 최고형은 모두 사형이므로, 결국 피고소인들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처럼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도 남아 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할 책임이 있다.

4. 범죄사실 -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가. 증거날조 - 고문의 본질

(1) 고문방지조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의하면 “고문”이란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 내고 그 개인 또는 제3자가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이)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제1조 제1항).

(2) 이러한 고문의 정의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듯이 고문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는 것과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고문을 통하여 얻어낸 “정보 또는 자백”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정보 또는 자백”이 바로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에게 가하는 고문이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하는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다른 점은 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와 관련되어 있는가 여부에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고문을 그에 이어진 형사절차, 즉 고문을 통하여 얻어낸 자백을 바탕으로 한 형사처벌의 목적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고문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고문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받는 고통은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문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연약한 육체에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이겨내지 못한 피해자는 고문을 가하는 자들의 정신적 노예가 된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기 위하여, 한 대의 매라도 덜 맞기 위하여, 한 조각의 잠이라도 자고 한 모금의 물이라도 얻어 마시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자 그대로 통닭처럼 매달리고, 발가벗긴 채 학대와 모욕을 당하고, 무수한 구타와 구둑발에 짓밟히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비굴하게 빌어야 했던 그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고문의 피해자들은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마저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짓 진술에 동의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지장을 찍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가하는 고문은 바로 이러한 목적,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허위자백의 강요, 다시 말하면 증거날조야말로 고문의 본질인 것이다.

(4) 절대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진 혐의가 진실인지 여부를 증명할 절대적인 방법은 없는 이상, 가해자는 고문에 의하여 얻어낸 자백이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제 3자를 또다시 고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수의 사람이 관계된 정치적 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토대로 새로운 자백이 덧붙여져 "사실"이 쌓이게 되고 그 사실을 벽은 점차 높아져서 이제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쌓인 "사실"과 어긋나는 "진실"이 이제 오히려 허위와 날조의 혐의를 쓰게 되며 마침내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피해자에게조차도, 불가능하게 되기 쉽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이유외에도 이처럼 거짓과 진실을 뒤섞어 가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차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고문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살인행위 보다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고문에 의한 자백은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고문"이란 그 본질상 "허위"와 "조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진실"추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고문"을 가한다는 것은 곧 "허위"자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5) 모든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고문해서는 안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한다는 것은 곧 그를 유죄로 간주하는 것이며 "허위자백"을 받았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만일 자백이 없더라도 피의자

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굳이 고문을 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피의자의 혐의부인은 스스로 "개전의 정"이 없음을 증명할 뿐, 자신에게 어떤 이로움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문을 통하여 자백을 받으려 하는 것은 자백 외에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곧 그 혐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뜻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인하지만 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곧, 가해자가 증거없이 피해자의 유죄를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죄"임에 틀림없는 그 피의자를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이 가지게 된 심증이란 것은 얼마든지 틀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곧 "허위자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증거조작과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더구나 단순한 강요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것은 이미 허위자백을 받아서라도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말겠다는 보복심리의 발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고문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문은 곧 "허위자백"의 강요이며 증거날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6)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가혹한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얻어내려고 노력한 이유는 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문을 은폐하는 구조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형사재판과정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 한 달에 걸친 피고소인들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가 되면 피고소인들은 "(대공분실에서 한) 자백을 반복하면 다시 데려와서 맛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검사실에까지 피고소인들이 따라 들어와 신문과정을 뒤에서 지켜보며 고소인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 고소인 박충렬의 경우 검찰송치 당일 인천지검 남창현 검사실에 고문경관이 따라 들어와 검사가 보는 앞에서 "다시 분실로 가고 싶으냐"라고 위협하며 구타했고 검사는 이를 방조하였다. 고소인 염종영의 경우, 경찰에서 한 자백을 부인하자 담당검사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끌고 내려가라"고 지시하였고 따라왔던 이 지시에 따라 대공분실 형사 2명과 교도관이 염종영을 검찰청 구치감으로 끌고 내려가, 발가벗긴 후 발목을 밧줄로 묶어 거꾸로 매단 채 코와 입에 물을 들이붓고 온몸을 구타하였다. 그 때는 12월 말이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소인들의 이른바 “반제동맹”사건의 1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소인 한중철은, 불법감금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해주었는데도 피의자들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대공분실에 남아있었다”고, “소가 들어도 웃을 만한”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그런 위증을 토대로 고소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너무도 뻔한 불법체포와 감금,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고문과 증거날조를 제대로 조사하고 밝혀내려는 시늉이라도 하였다면, 피고소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와 보안사, 그리고 경찰이 저지른 수많은 고문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범죄행위의 정황

(1)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간첩죄, 지령수수 잠입탈출과 회합, 통신회 등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잔혹하게 고소인들을 고문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당시 고소인들에게 “북한의 지도이념 및 정치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그에 관해 예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도록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고소인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해 그러한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2) 아래에 열거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과 시간, 장소, 가해자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부와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수 주일에 걸쳐 밀실에서 수시로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이름과 직책도 알 수 없고 여러 명씩 몰려다니는 피고소인들로부터 적게는 5, 6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되풀이하여 고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고소인들로서는 피고소인들의 이름과 행위를 연결시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소인들 및 그들의 고문행위를 지시하고 가담한 자들을 고소인들과 대질신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라. 피고소인들의 증거날조 - 허위자백의 내용

(1) 피고소인들은 1986년 10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에 걸쳐 고소인들을 불법으로 체포·연행하여,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감금한 채 (같은 해 11월 12일까지는 영장조차 없이 불법감금한 채) 고문을 가하였다. 고문을 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자백의 내용은, 대체로 “평양에 갔다 온 것을 알고 있다. 언제, 몇 번,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갔다 왔는지를 말하라”, “너희들은 통혁당의 잔당으로서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누구와 만났는지를 대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전기, 권총, 난수표등을 어디에 숨겨

두었는지를 대라”, “통혁당의 후신으로서 조직한 (반국가단체인) 너희 조직의 명칭과 강령을 대라”,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왔다고 (자술서) 써라”, “성명불상의 북한공작원과 접촉하였다고 써라”, “통혁당을 계승한 조직을 건설하였거나 그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써라” 등의 내용이었다.

(2) 요컨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이 통혁당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 밀입북하였고, 이후 남하하여 탐지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구성·가입하였다”는 각본에 맞추어 고소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자백을 얻어내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고소인들이 한 일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그러한 진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를 강제로 얻어내기 위하여 잔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피고소인들이 가한 고문은 단순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또는 간첩죄, 지령수수 잠입·탈출죄등의 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백을 날조하였던 것이다.

(3) 고소인들이 당시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당시 고소인들이 고문을 당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허위자백을 하고 어떤 부분은 허위자백을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소인들로부터 아래에서 매우 간략하게 살펴 볼 것처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밀입북, 조선노동당 가입, 고정간첩과 접촉, 간첩활동, 반국가단체 구성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하거나 혹은 부인하기도 하였다. 고소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피고소인들, 그리고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강요해서 얻어낸 그러한 혐의들이 너무도 황당무계하였기 때문인지, 결국 고소인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혐의가 거의 다 사라지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중심으로 해서 공소장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고소인들로 하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혐의를 뒤집어씌운 다음 그에 관하여 살인적인 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고 기도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아무런 변함도 없는 것이다.

(4) 예컨대,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고소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는 박충열 등 고소인들이 “... 북괴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선진적 대중조직으로서 반제동맹을 구성하려고 한 것이 북괴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예비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한 것”이라거나 “조선노동당 강령 및 규약을 참고하여 (반제동맹노동자당) 규약 초안을 작성하면서 당 건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소인등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정치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위조직의 건설에 대해 합의하였다”, “...

북한괴뢰집단의 대남혁명노선을 그대로 따라 활동하는 단체"라는 내용, "(고소인들이) 구성된 단체가 공산주의혁명노선과 더 나아가서는 북괴의 대남혁명노선 및 그 지도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단체"이며 그 목적은 "북괴의 군사력을 지원 역량으로 하여 북괴와 같은 사회주의통일국가를 형성하려 한 것"이며 이 "결국 자유대한의 기존질서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이고, 고소인 박충열은 "대한민국 헌정부를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국가를 변란하여 남북한 사회주의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할 목적 하에 구성, 활동하여 왔고, ... 위와 같은 목적 하에 그 수괴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여 온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자백을 날조한 명백한 증거이다.

마. 증거날조의 수단으로 가한 고문의 내용

(1)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 증거를 날조하기 위해 온갖 고문을 가하여 고소인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극심한 폭행과 잠안 채우기 같은 방법 외에도 피고소인들은 다음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하였다.

① 통닭구이 :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은 다음, 양팔과 무릎 사이에 쇠파이프를 끼워 넣고 그 쇠파이프를 들어올려서 책상 따위에 걸쳐 둔 상태에서, 공중에 마치 통닭처럼 매달려 있는 사람의 발바닥과 엉덩이, 무릎을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구타하거나, 코나 얼굴에 물·고추가루 따위를 들이붓는 고문방법. 그런 상태로 몇 시간 동안 폭행하고 나면 피해자는 손과 발이 마비되면서 부어오르고 숨이 차며 정신이 어지러워지다가 마침내 실신상태하게 되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게 된다.

② 고추가루·물고문 : 사람을 눕히거나 매달아놓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거나, 주전자로 입 또는 코에 물이나 고추가루 탄 물을 들이붓거나, 고추가루를 코에 가득 넣고 거기에 물을 붓는 등의 고문방법. 이 고문을 당하면 피해자는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이 되고 눈도 뜰 수 없게 되며 온몸이 화끈거리며 피땀을 싸게 된다.

③ 날개찍기 :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두 명이 피해자의 두 다리를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잡아당겨 복사뼈가 바닥에 닿도록 벌린 다음 어깨 위에 올라타거나 허벅지를 구둑발이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고문방법. 피해자의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 무릎관절이 뒤틀려 그 후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진다.

④ 관절끼기 : 앉아 있는 상태에서 또는 매트리스 위에 몸을 엎어놓은 상태에서 몸 위에 올라타고 팔목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무릎관절, 목관절 등을 비틀고 뒤로 꺾어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다.

⑤ 쇠파이프로 어깨 내려치기 :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두 어깨를 수없이 구타하고 나면 어깨에 손을 스킨기만 해도 전신이 감전된 것과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상에서 나열한 고문방법 이외에도 5일 내지 7일 정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음식 또는 물을 며칠 동안 주지 않거나, 5~6명이 덩벼들어 무차별 구타하거나, 손가락으로 목젖을 힘껏 잡아당기며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그 당시 종종 일어났던 '의문사'사건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그런 식으로 죽여서 내다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고문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검찰로 송치된 후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데리고 와서 고문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끝없이 가하였다. 실제로 당시 고소인들에 대한 어느 수사검사는 고소인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피고소인들을 참여시키고 고소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면 "대공분실로 되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들이 대공분실에서 한 허위자백을 그대로 되풀이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피고소인들의 고문은 단지 이근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을 포함한 전체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다.

(2) 고소인 박충열에 대한 증거날조

① 1986년 10월 30일 18:00경 고소인 박충열을 영장없이 인천동부경찰서로 연행한 피고소인들은, 인천동부경찰서 5층에 있던 대공과 신문실에서 같은 날 22:00경부터 약 4~5시간에 걸쳐 고소인의 온 몸을 구둑발로 짓밟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난 움큼씩 뽑아내고, 가죽허리띠로 무차별 구타하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소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가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② 인천시 만수동에 있던 경기도 경찰청 대공분실로 기소인을 옮긴 다음 같은 해 10월 31일 14:00경 피고소인들 중 3인이 수갑을 차고 있던 위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온 몸의 관절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당기며,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피고소인 이근안, 한종철등이 가세하여 무차별 구타, 관절끼기 등의 고문을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③ 같은 해 11월 1일 22:00 경부터 11월 2일 04:00 경까지 피고소인 이근안의 지휘 아래 한종철 등 6~7명이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을 하면서 쇠파이프로 무릎, 발바닥, 머리 등 온몸을 구타하거나, 물과 고추가루물을 위 고소인의 코, 입, 눈에 들이붓는

방법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④ 같은 달 2일 06:00경부터 12:00경까지 이근안, 한종철등 3명이 "(간첩활동을 하는 데 이용한) 비밀아지트를 대라"며 통닭 구이 고문, 물·고추가루 고문 등을 계속하고, 고문을 견디다 못한 고소인이 여러 차례 혼절하자 그때마다 위 고소인을 바닥에 내려놓고 온몸에 물을 끼얹고 등을 두드리며 배를 쓰다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알약을 먹여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다시 위와 같은 고문을 계속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⑤ 같은 달 5일 20:00경 항상 수갑이 채워져 있던 위 고소인이 고문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살을 기도하자, 이근안과 한종철을 비롯한 7, 8명이 몰려와 "네가 아직도 장난을 치는구나. 네가 다시는 이런 소동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본 때를 보여주겠다. 우리도 체면이 있다. 네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마"라는 등의 고향을 치면서 면서 위 고소인을 "날개꺾기"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구둣발로 짓밟고 팔을 비틀고 목을 쥐는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⑥ 같은 달 7일 20:00경부터 24:00경까지 및 같은 달 10일 20:00경부터 같은 달 11일 04:00경까지, 그리고 같은 날 16일부터 30일까지 거의 매일, 연행된 이후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소인에게 통닭구이, 관절꺾기, 물·고추가루 고문을 가하고, 고소인의 온 몸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쇠파이프와 구둣발로 무수히 구타하면서 "우리들이 부르는 대로 평양을 갔다 왔다고 받아써라"고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증거를 날조하였다.

(3) 고소인 이민영에 대한 증거날조

① 같은 해 10월 30일 12:00경 영장없이 고소인을 체포하여 인천 동부경찰서로 연행한 피고소인들은,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달 31일 01:00경까지 위 경찰서 5층 대공과 신문실에서 위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워 넣은 다음 허벅지를 짓밟고,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차고 때리는 등의 고문을 하면서 간첩활동을 자백하라고 강요하여 증거를 날조하고,

② 인천시 만수동에 있던 경기도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같은 해 10월 31일 17:00 경부터 같은 해 11월 1일 22:00 경까지, 같은 달 2일 04:00부터 10:00경까지, 같은 달 3일 04:00경부터 08:00까지 "너희들은 통혁당의 잔당이다. 통혁당과 접선관계를 대라. 무전기를 내놓아라. 평양에 갔다 온 사실을 대라. 여기 한 번 들어온 이상 다 불지 않고서는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며 몽둥이,

구둣발로 위 고소인의 온몸을 구타하고, 날개꺾기, 팔목·손가락·발목관절 꺾기, 통닭구이 등의 고문을 가하여 위 고소인의 정신이 시커멓게 멍이 들게 하고 여러 차례 실신하게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증거를 날조하고,

③ 같은 해 11월 9일 22:00경부터 같은 달 10일 04:00경까지, 그리고 같은 달 15일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위에서 너희들을 죽여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너희들 죽으면 내다버리면 그만이다. 조정식이를 담당한 형사가 조정식이를 싸 죽이려고 권총을 들고 나왔으나 우리가 말렸다. 네가 이렇게 협조를 안하면 네 여동생을 데려다가 고문하겠다. 우리가 못할 줄 아느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네 가족 모두를 구속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고소인들이 요구하는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실제로 고소인은 아무도 모르는 채 살해되어 버릴 수 있고 고소인의 가족들은 날조된 혐의로 구속되어 고문을 당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믿게 하여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나아가 슬리퍼와 주먹, 발 등으로 어깨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가하여 증거를 날조하였다.

④ 심지어 같은 해 10월 30일 경 고소인을 강제연행한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피고소인들과 함께 주전자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을 본 고소인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애원하자, 고소인 한종철은 고소인이 보는 앞에서 물을 바닥에 쏟아 버리다가 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던 고소인의 손을 내리쳐 한 방울의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고소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을 왕래하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자백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보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날조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4) 고소인 우종원에 대한 증거날조

① 피고소인들은 같은 해 11월 2일 16:00경 고소인을 위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체포·연행한 다음, 같은 날 18:00경부터 22:00경까지, 그리고 같은 달 3일 21:00경 한종철을 비롯한, 피고소인 10여명이 "평양에 몇 번이나 갔다왔느냐. 지령을 받고 구성된 조직의 강령을 대라"고 요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고소인에게 "네가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느냐"고 하면서 주먹과 발, 박달나무 몽둥이로 고소인의 양어깨와 온몸을 무차별 구타하고, 통닭구이 고문을 하며 발바닥을 수도 없이 내리치다가 고소인이 실신하면 정신이 들기를 기다려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고,

② 같은 달 6일 20:00경부터 7일 04:00경까지, 같은 달 8일 20:00경, 같은 달 10일 23:00경부터 11일 02:00경까지, 같은 달 15일 21:00경,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통닭구이 고문을 하며 물주

전자로 고추가루를 탄 물을 고소인의 얼굴에 들이붓고 발바닥을 무수히 내리치고, 그로 인해 고소인이 실신하자 고소인의 온몸에 찬물을 들이부어 깨운 다음 손목·어깨 등의 관절을 꺾고 비틀어 고소인을 다시 실신하게 하고, 또한 소변과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을 가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왕래하면서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증거를 날조하였다.

“ (5) 고소인 전원하에 대한 증거날조

① 피고소인들은 같은 해 11월 3일 영장없이 체포한 고소인 전원하를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감금한 다음 “평양에 다녀 온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온몸을 구둑발로 밟고 팔·목 등의 관절을 꺾고,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가하여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고,

② 같은 달 8일 21:00경부터 9일 02:00경까지 피고소인 윤기영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평양에 갔다 온 사실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면서 날개꺾기 고문을 하고, “너네들은 죽어도 좋다는 상부지시가 있었다”, “권총을 가져올테니 기다려라”고 하는 등의 말로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였다.

(6) 고소인 김현권에 대한 증거날조

같은 해 11월 3일 05:00경 고소인을 위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체포하여 연행한 피고소인들은 밀실에 갇힌 고소인을 둘러싸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북에 몇 번 갔다왔느냐, 김일성의 초상화는 언제부터 방안에 모셔두었느냐, 이민영이 북에 갔다 온 사실을 아느냐, 너의 조직의 강령이 무엇이나,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낸 게 언제냐”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면서 쇠파이프, 각목, 구둑발로 위 고소인을 무차별 구타하는 등 그로부터 구속기간 중 고소인에게 무차별 구타와 관절꺾기, 통닭구이 등의 고문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였다.

(7) 고소인 이병주에 대한 증거날조

같은 해 10월 30일 15:00경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체포·연행하여 불법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고소인들이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간첩활동을 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4, 5일간 잠을 채우지 않고 수시로 구타하여 타박상등을 입게 하고, 고소인을 매트 위에 넘어뜨린 다음 10여명이 고소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전신의 관절을 비틀고 꺾어 골절상등을 입게 하고, 쇠파이프로 고소인의 어깨죽지를 수십 차례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였다.

(8) 고소인 여영화에 대한 증거날조

① 같은 해 11월 3일 09:30경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위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체포·연행하여 불법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7~8명이 달려들어 주먹, 발, 각목 등으로 고소인의 온몸을 구타하고, 그 이후 약 5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언제 평양을 다녀왔느냐, 무전기와 권총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불러라. 너희 조직의 강령이 무엇이나, 이민영은 이미 평양을 갔다왔다고 불었다. 너희 조직은 통혁당의 후신으로서 ‘통혁당만세’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써라”는 등의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희들은 죽여서 산이나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네 가족들을 데려다 고문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증거를 날조하고,

②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자백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2, 3명 또는 7, 8명이 달려들어 통닭구이 고문을 하면서 쇠파이프로 고소인의 전신을 구타하거나, 날개꺾기 및 관절꺾기 등의 고문을 가하여 고소인을 실신하게 하게 하고, 그 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게 하고, 온몸이 시커멓게 변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였다.

(9) 고소인 염종영에 대한 증거날조

① 같은 해 12월 말경 피고소인들은 위 고소인을 인천 동부경찰서로 불법 체포·연행한 후 마찬가지로 간첩활동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고소인에게 발가벗긴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채로 물고문, 통닭구이고문을 가하여 증거를 날조하고,

② 그로부터 2-3일 뒤 고소인의 눈을 가린 상태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하여, 그곳에서 피고소인 한중철을 비롯한 5, 6명이 쇠파이프로 고소인의 어깨, 목 등을 수십 차례 구타하고, 2, 3일 동안 철야로 급소를 누르거나 관절을 꺾는 등의 고문을 가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증거를 날조하고,

③ 그로부터 3, 4일이 지난 후 인천지방검찰청의 어느 검사실에서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던 고소인이 경찰에서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자 그 검사는 고소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조사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대공분실로 되돌려보내겠다”고 한 다음, 위 검사실에 대기 중이던, 대공분실 소속 피고소인들과 성명불상의 교도관 2명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검찰청 구치감으로 끌고 내려가 고소인을 발가벗긴 채 밧줄로 고소인의 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로 몽둥이로 발바닥과 온몸을 구타함으로써 고문에 의하여 한 허위자백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증거를 날조하였다.

(10) 고소인 김구현에 대한 증거날조

① 같은 해 11월 5일 20:00경 고소인을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체포·연행하여 불법으로 감금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간첩활동과 "반국가단체 가입"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 5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양손을 등뒤로 껴 수갑을 채운 다음 무릎에 각목을 끼우고 허벅지를 짓밟고 몽둥이로 등과 허벅지를 무차별 구타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고,

② 그 후에도 피고소인 한중철과 윤기영을 비롯한 4, 5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 가입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날개찍기, 통닭구이, 물고문을 가하고 허위자백을 거부하자 "이런 새끼들은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죽여서 38선에 갖다버리고 적당히 처리하면 그만이다"는 등의 협박을 가함으로써 증거를 날조하였다.

(11) 고문의 결과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가한 야만적인 고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 모멸을 당한 것은 물론, 대부분 온몸에 피멍이 들어 시커멓게 변하고 수없이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대변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관절과 근육 등의 상처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고문을 당한 고소인 박충열은 수사기간 동안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의경 3, 4명이 고소인을 업고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예 뒤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변을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날조한 피고소인들은 그후 약한 달에 이르는 구속기간 동안 고소인들의 몸에 상처를 가라앉히는 연고 따위를 발라 그 흔적을 지워지게 함으로써 "반계동맹당" 사건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날조된 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기간 동안에도 일부 남아 있던 흔적들은 남중현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의 무시와 은폐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았다.

고소인들 대부분은 위 사건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주먹과 발,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를 당한 허리나 어깨·무릎은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다리가 시린 증세 또는 신경마비증세를 겪고 있다. 고소인 우종원은 한 때 두 손의 감각이 마비되어 물건을 집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고소인 전원하는 물고문과 잠고문, 구타 등의 결과 각막염 증세가 생기고 극도로

악화되어 실명위기에까지 이르러 각막이식수술을 받아야 했다. 고소인 김현권은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94년에는 우측 안구 초자체 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아직도 완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절끼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우측 고관절 피사증세가 생겨 고관절을 절단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좌측 고관절에까지 피사가 진행중이다. 고소인 이병주는 어깨부위의 신경통과 허리 디스크 증세가 나타나 1990년 12월 디스크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고소인 김구현은 어깨신경마비, 무릎관절염, 신경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가져온, 무려 14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는 결과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의 부서진 몸과 마음을 증거로 삼아, 아직도 고소인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 그 잔학한 증거날조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5. 맺는 말

고소인들이 해묵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고문행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에 걸친 암흑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채 곳곳에서 은폐, 비호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문으로 날조된 증거로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을 당한 피해자들은 부서진 육체와 정신,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반면,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은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죄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소인들은 그 때의 일을 떠올리기조차 끔찍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고소인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고문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단지 고문행위 그 자체만을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고문의 피해자들에게 인간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인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하여,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다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는 것이다.

2000. 1. 12

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전화 : 567-2316

변호사 김창극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568-3439

팩스 :